

편집위원회 운영규정

2000. 06. 10. 제정
2005. 05. 09.
2017. 09. 19.
2018. 07. 17.
2024. 02. 17.
2024. 10. 21.
2026. 04. 04. 개정

제 1조 (명칭)

본 위원회는 대한핵의학기술학회(이하 "학회") 회칙 3장 5조에 의거하여 편집위원회(이하 "위원회")라 칭한다.

제 2조 (목적)

본 규정은 학회 학술지인 「핵의학기술」의 출판 및 학술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.

제 3조 (구성)

위원회의 인원은 다음 각 호로 구성된다.

1. 위 원 장 : 대한핵의학기술학회 회장이 임명
2. 부위원장 : 1인
3. 편집위원 : 15인 이내로 구성(핵의학 분야에서 연구성과, 학술업적, 편집 능력 및 연구윤리성을 갖춘 자로 위원장이 임명한다.)

제 4조 (임기)

위원장, 부위원장 및 위원은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결원으로 충원된 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 5조 (임무)

위원장, 부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위원장 : 편집위원회를 운영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.
2. 부위원장 :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3. 편집위원 : 논문 심사 및 평가, 학술상 심사, 학술지의 편집 및 발행 등 「핵의

학기술」의 출판 및 학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.

제 6조 (업무)

위원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.

1. 학술지의 기획,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사항
2. 학술지의 질적 향상에 관한 사항
3.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

제 7조 (회의)

위원회의 정기적인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하며, 새로운 사안이 발생할 시는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 회의 불참 시 위임장을 제출한다. 위원회의 성립은 편집위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. 위원회의 소집 시에는 심의안건을 개최 일주일 전에 통보해야한다. 다만, 긴급한 사안일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제 8조 (회의록)

회의 사항은 부위원장이 기록하여 보관하고, 심의 및 의결 사항과 활동은 위원장이 서면으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9조 (투고규정)

투고 규정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.

제 10조 (학술상)

학술상의 심사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.

부 칙

본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에 따른다.

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